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4
------------	-----

2019년 6월 18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9. 5. 24. 송재혁 의원 발의 (2019. 5. 30. 회부)

2. 제안이유

- 현수막 바탕색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라는 애매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인쇄에 사용하는 색은 대개 혼용색으로 빨강·파랑·노랑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바탕색은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는 내용은 문장의 수식관계가 옳지 않으므로 어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를 삭제하고 나머지 문장은 수식관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현수막의 바탕색 제한을 삭제하고 문장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19년 5월 24일 송재혁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¹⁾ 이 조례 제11조에서 현수막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현수막의 바탕색 제한의 예외사항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등을 들어 현수막 바탕색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이하, 표준조례안)과 다른 시·도 조례를 살펴보면, 표준조례안에서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제한 사항이 있고 대부분의 시·도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바탕색에 특정 색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서울시는 현수막 바탕색을 적색과 흑색 외에도 노랑색·파랑색까지 제한하되 예외적 운영을 허용하고 있음(붙임1).
- 현수막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도시미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비중이 있는 반면, 일정 규격이 되지 않으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²⁾, 시민들의 과도한 시각적 자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이 조례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극과 도시미관 저해의 방지 차원에서 현수막의 바탕색 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에서³⁾ 광고물등의 바탕색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수막의 바탕색 제한도 이와 일관될 필요가 있다 사료되고,

현수막 바탕색 제한의 예외 사항은 관혼상제 또는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에 따른 색깔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⁴⁾, 이와 중복된 규정(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은 삭제해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3) 이 조례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u></p> <p>4. ~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바탕색은</u> -----</p> <p>-----, <u>현수막은 창문을</u></p> <p>-----.</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붙임1] 타·시도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및 현수막 표시방법(자료: 도시빛정책과)

구 분	표 시 내 용
<p>행자부 표준조례안</p>	<p>제3조제1항 3.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p> <p>제12조제1항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p>
<p>서울특별시</p>	<p>제2조제3항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제1항 3.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p>
<p>부산광역시</p>	<p>제3조제1항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p> <p>제12조제1항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p>
<p>대구광역시</p>	<p>제3조제3호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p>
<p>대전광역시</p>	<p>제3조제1항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내이거나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p> <p>제12조제1항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p>
<p>울산광역시</p>	<p>제12조제1항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p>
<p>광주광역시</p>	<p>제3조제1항 2.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p> <p>제12조제1항</p>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제3조제1항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3.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강원도	제3조제1항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 등을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제3조제1항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충청북도	제3조제1항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제3조제1항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	제3조제1항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붙임2]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같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사·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